

의안번호	2206713
의 퇴 인	이종배의원
회 답 일	2024.12.30.
추계번호	24D6713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정의)	사회재난의 범위에 「식물방역법」에 따른 식물병해충의 확산을 포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식물병해충의 확산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경우, 식물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또는 매뉴얼 개발 및 실시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행법 근거하여 사회재난으로 정의되는 경우, 재정소요 항목으로 식물병해충 피해 대응 등을 반영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(제22조, 제71조의2 등), 식물병해충 피해 예·경보 체계구축(제38조의2), 식물병해충 피해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(제66조) 등을 고려할 수 있음

- 다만, 현행법에 근거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식물병해충 관련 예방 및 대응, 식물병해충 관련 연구개발, 지원 등이 일부 수행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기존 사업의 내용 및 범위, 신규 사업내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- 참고로, 식물병해충에 의한 피해는 농업 및 임업 분야¹⁾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에 규정한 농업재해²⁾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
 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이란 가뭄·홍수·호우·해일·태풍·강풍·이상저온·우박·서리·조수·대설 또는 한파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으로 한정
 - 개정안에 따라 사회재난에 식물병해충이 포함된다면 피해 지원대상이 되는 병해충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
1) 식물병해충에 의한 인명피해(사망, 부상, 후유증 등)는 주로 방제작업 중 안전사고 등으로 이차적인 피해로 볼 수 있고, 이는 방제작업자가 공무원인 경우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, 민간인인 경우 「산업재해보험법」 등으로 피해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됨

2)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농업재해”란 가뭄, 홍수, 호우(豪雨), 해일, 태풍, 강풍, 이상저온(異常低溫), 우박, 서리, 조수(潮水), 대설(大雪), 한파(寒波), 폭염(暴炎)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(病害蟲), 일조량(日照量) 부족, 유해야생동물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),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, 농경지, 농작물, 가축,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.

3. “어업재해”란 이상조류(異常潮流), 적조현상(赤潮現象), 해파리의 대량발생, 태풍, 해일, 이상수온(異常水溫),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